

제 안 설 명

-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1. 경 과

- 가. 제 안 자 :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- 나. 제안일자 : 2007년 11월 30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66회 정례회
 - 2007년 11월 30일,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심의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강태원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 및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규 조문번호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관계법규 인용조문 변경
 - 「지방자치법」 제82조 및 제83조를 제90조 및 제91조로 변경함.
(안 제1조)

3. 검토보고요지

(의회운영전문위원 윤기관)

- 「지방자치법」과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조례제정 근거 및 관련법규 조문번호를 인용하고 있는바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 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 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 가결”

7. 기 타 의 견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제안설명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지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82조 및 제83조”를 “제90조 및 제91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관계 법령 발췌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90조(사무처 등의 설치) ①시·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,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.
②시·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, 사무국·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.
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 및 직원(이하 이 절에서 "사무직원"이라 한다)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.

제91조(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) ①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.
②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·기능직·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.